

2025년 제11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규칙 제872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감면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및 장애인”을 “등의”로 한다.

제19조 중 “제42조”를 “제43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0조) 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급수정지처분 예고)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p> <p>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감면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에 <u>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임을 증명하는 자료나 감면 해지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업무 담당 부서(감면대상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포함)에서 감면대상자의 신상변동 사항(신규·전출·사망 등)을 일괄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③ (생략)</p> <p>제19조(급수의 표지)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p> <p><신 설></p>	<p>제18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감면대상자</u> ----- ----- ----- ----- <u>등의</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급수의 표지) -- <u>제43조</u> -- ----- ----- -----</p> <p>제20조(급수정지처분 예고) ① <u>조례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u></p>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는 시장이 부과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 제46조-----

-----.